(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선상낚시와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 안내하였을 경우 낚시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(구명조끼 착용 지시 및 통신기기 작동 이상 여부 확인 등)하고 인근해상에 대기 및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, 긴급상황 발생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거부하여야 한다.

(승객의 준수사항)

- 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가 전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승객은 『수산자원관리법』 등에서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.
- ③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 후 승선 하여야 한다.
- ④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.
 - 2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.
 - 3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.
 - 4. 영업시간 외 항해요구 및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.
 - 5. 선상 및 갯바위 등에서 쓰레기 투기·취사·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 하는 행위.
 - 6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7. 낚시어선 승객은 출항 시부터 안전하게 입항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 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.
 - 8.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 - 9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 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